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각급 징계위원회 풀 구성을 위해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퇴직이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 퇴직 전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퇴직 예정일을 별도 관리하고 우선심사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체납 시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수 위탁을 위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풀 구성의 성별 균형 제고(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 일부개정)

1)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안 제11조의3제1항

제2호,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1) 징계 등 혐의자의 퇴직이 임박하여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우선심사 신청 의무화

2)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3)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징계처리대장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다.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일부개정)

라. 징계위원회 의결서 상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사유 명시 안내(안

별지 제3호서식 일부개정)

마. 징계부가금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처분권자의 조치사항

및 세무서 위탁 방법 등 절차 규정화(안 제19조의2제2항 일부개정)

2) 입법예고(2021. 9. 8. ~ 10. 18.)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의 정년(계급정년, 근속정년 포함),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엔 경우 즉시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장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여부”를 “여부,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의 규정개정에 따른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개정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로 남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확인서

1. 인식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협의 당시)	(현재) (협의 당시)		
2. 비위 유형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희롱 ☐ 해당함, ☐ 해당 없음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해당함, ☐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직원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소극행정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신회 피의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함, ☐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			
	무정청탁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 여부(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백)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징 대상 공직 유무 및 감징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직 사항			
	포상일	공직 종류	시행청	발령청
	성실하고 등등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날짜	종류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주위·경호·경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금융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퇴직 예정일			
	장년: . . . , 계급장년: . . . , 근무기간 만료: . . . , 기대(): . . .			
	그 밖의 정상 창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없음을 확인합니다.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10mm×297mm[백상지 80g/㎡]

정 계 또 는 정 계 부 가 금 처 리 대 장

[illegible]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후단 신설> 1. ~ 4. (생략) ④ ~ ⑥ (생략)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4. (생략) ⑤·⑥ (생략)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의 경우에	제11조의3(우선심사) ① ----- ----- -----

는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생략)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생략)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현행과 같음)
- -----

-- 경우. 다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의 정년(계급정년, 근속정년 포함),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③・④ (생략)	<u>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u> <u>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u> <u>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u> <u>장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u> <u>다.</u> ③・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복무과	
연락처	(044) 201 - 8434